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196 발의연월일: 2025. 1. 2.

발 의 자:한병도・이개호・안규백

이해식 · 서미화 · 임오경

윤준병 • 한정애 • 박수현

부승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임.

그런데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압수 및 수색을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과 제111조제1항을 근거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바, 위 조항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신설).

법률 제 호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압수 등에 관한 특례)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5조(압수 등에 관한 특례) 제2
	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
	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
	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